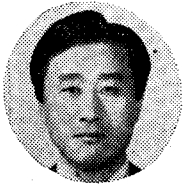


技術導入과 外國商標使用

〈上〉



李 學 鉉

〈經濟企劃院 審議官室1 課長〉

① 序 論

1. 概 說

우리나라는 1962年 第1次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以來 3 차에 걸친 經濟計劃의 成功的 遂行으로 輸出의 劃期的 增大와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發展의 背景에는 輸出主導型의 工業政策과 이를 뒷받침한 外國先進技術의 導入活用に 힘입었던바 컸음을 否認할 수 없으며 國內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의 實情을 勘案한다면 앞으로의 成長戰略도 이러한 基盤 위에서 追求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國際經濟環境을 볼 때에 自國中心의 保護貿易主義政策이 만연하고 資源카르텔을 비롯한 불리經濟化가 加速化되고 있으며 後發開發國의 競爭參與 등으로 우리의 경제는 對外的으로 어려운 狀況에 直面해 있을 뿐 아니라, 對內的으로는 產業構造의 改編이나 對外競爭力의 提高 등의 課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의 繼續的인 增大와 成長을 持續시키기 위하여는 低賃金에 바탕을 둔 成長戰略에서 高附加價值 生産業으로의 轉換이 不可避하며 이에는 技術革新을 통한 製品의 高級化, 多樣化로 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國內技術水準의 向上을 위한 自體技術開發은 물론 外國으로부터의 先進技術의 果敢한 導入이 要請된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輸入自由化에 對備하고 輸出促進과 製品의 高級化 내지 品質向上을 위한 手段으로서 外國商標의 사용에 대한 論議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

는 바 以下에서 技術導入의 目的, 現行技術導入 認可制度 그리고 기술도입과 外國商標使用問題에 대해 概觀해 보고자 한다.

2. 技術導入의 動機 및 必要性

오늘날 기술도입은 先發國을 不問하고 기술혁신의 한 重要한 手段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도입된 기술은 落後된 分野의 기술을 改善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고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좁혀 經濟發展을 加速화시키는 主要한 原動力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速度가 빠른 現代社會에서는 企業家가 消費者의 새로운 需要에 應하여 製品을 市場에 供給하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기에 기업가는 그 利潤의 一部를 研究開發(R & D)에 投資하거나 이미 市場性이 있는 外國技術의 도입을 計劃하게 된다.

이들의 技術導入動機를 大別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營業的 動機에서 일어나게 된다.

- (1) 新製品, 新技術의 開發
- (2) 既存製品의 品質 및 性能改善
- (3) 生産性 增大
- (4) 輸入代替, 輸出增大
- (5) 既存業種과의 競爭 등

3. 技術導入의 對象

기술도입은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其他 技術을 讓受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權利를 取得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相當히 包括的이다.

공업소유권에는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

權의 4種類가 包含되며 때로는 商號登記에 의한 商號權 기타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不正競爭禁止權 등도 包含하여 解釋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公認소유권은 一種의 排他的 내지 獨占의 效力이 따르는 無體財產權으로 國內에서 外國의 특허권으로 保護되려던 國內에 登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특허권 이외에 기술도입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活用되고 있는 Know-how는 工業所有權制度에 의해 보호되는 産業技術이 아니고 그 秘方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의 無體財產權의 性格이 認定되는 권리로서 어떤 發明이나 그 改良技術을 所有者가 秘密에 붙임으로써 財產의 價値를 確保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特許權實施契約과 Know-how 실시계약의 差異를 比較해 보면 아래 表와 같다.

特許實施契約과 Know-how 實施契約의 比較

區 分	特許權 實施契約	Know-how 實施契約
○領域的 制限	有	無
○有效期間	有	無
○權利的 設定 및 效果	登錄	秘密維持
○法的 保護	特許法	契約內容
○契約期間 滿了後 繼續 使用與否	不可 (但, 特許權 消滅時 可)	可

그 밖에 기술도입의 대상은 專門技術者의 招請指導나 經營管理技法 등 그 範圍는 廣範圍하다.

4. 技術導入과 商標權

商標는 商品에 붙이는 獨特한 標識로서 商品出所의 同一性과 品質의 同質性을 確認시키고 販賣業者가 自己의 商品을 他業者의 商品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

하는 記號, 文字, 圖形 또는 그 結合의 特別顯著한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는 一定한 商品에 대한 消費者의 신뢰로서 超過利益을 받는 無形의 財產으로 소비자 가 商品을 購買사용하여 얻는 滿足을 基礎로하여 그 商品의 象徴인 상표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이러한 상표는 商標法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에는 權利로서 法的 保護를 받게 되고 그 效力은 10年間 存續한다.

따라서 기업가는 販賣促進效果 내지 新需要의 創出을 위해 外國有名商標의 도입을 피하게 되고 이 경우 技術導入契約의 一部分으로 商標 사용을 한 項目으로 하기도 하고, 特許權 등과 같이 商標權使用契約을 締結하기도 한다.

상표사용의 形態는 外國人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內, 外國人商標와 結合하여 사용(例, 金星-Hitachi)하는 경우가 있으며 外國인상표를 直接使用하지 않더라도 商品에 外國인과 技術提携에 의해 제조되었다는 事實을 記載하여 外國商標使用에 準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② 技術導入現況

1. 分野別 技術導入實績

우리 나라는 1962年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 이래 78년 6월말까지 外資導入法에 의한 技術導入 總件數는 1,040件으로 77년말의 907건에 비해 133건이 增加하여 77年度의 導入件數 170件에 거의 肉迫하고 있고 技術導入代價支給額도 78年 上半期中에 58,865千弗이 지급되어 前年度支給額 58,056千弗을 超過하고 있어 近年에 들어 外國先進技術의 도입이 加速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分野別 技術導入實績

78.6.30 現在

(單位: 件, 百萬弗)

區 分	農 林 水 產 業	業								社 會 間 接 資 本	合 計	代 價 支 給 額
		精 油 化 學	金 屬	電 氣	子 氣 機	機 械	造 船	其 他	小 計			
62-66	—	4	1	5	6	—	10	26	4	30	0.78	
67-71	7	59	23	61	60	1	44	248	19	274	16.26	
72-76	1	79	44	80	124	8	76	411	21	433	96.51	
77	1	24	13	29	65	7	19	157	12	170	58.06	
78(上半期)	1	19	10	24	49	5	16	123	9	133	58.86	
合 計	10	185	91	199	304	21	165	965	65	1,040	230.46	
構成比(%)	1.0	17.8	8.8	19.1	29.2	2.0	15.9	92.8	6.2	100	—	

國別技術導入 및 代價支給實績

78.6.30 現在

(單位：件，千弗)

區分	美 國		日 本		西 獨		프 랑 스		其 他		合 計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62-66	12	553.1	10	—	4	194.2	1	—	4	30.0	30	777.3
67-71	58	7,816.2	197	5,041.6	5	2,381.3	—	—	14	1,018.6	274	16,257.7
72-76	88	21,265.5	280	58,653.5	4	5,627.9	6	1,574.3	45	9,382.3	433	96,507.5
77	51	17,221.6	77	25,436.9	16	2,556.6	5	483.8	21	12,357.1	170	58,056.0
78(上半期)	22	17,441.7	77	14,983.4	5	2,187.7	4	619.3	25	23,633.4	133	58,865.5
合 計	231	64,298.1	641	104,115.4	44	12,947.7	16	2,681.4	108	46,421.4	1,040	230,464.0
構 成 比 (%)	22.2	27.9	61.6	45.2	4.2	5.6	1.5	1.2	10.5	20.1	100	100
件當代價支給平均	278.4		162.4		294.3		167.6		492.8		221.6	

2. 國別 技術導入 및 代價支給實績

기술도입을 導入國別로 보면 日本이 全體의 61.6%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美國 22.2%, 西獨 4.2%의 順으로 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對日依存이 쉽게 脫皮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移轉은 이에 隨伴된 施設財나 原副資材 등의 輸入依存을 深化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技術發展에 否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그러나 代價支給額을 國별로 보면 技術導入件數에 正比例하기는 하나 件當 代價支給平均額 221.6千弗을 基準으로 보면 日本은 162.4千弗로 相當히 저렴하다. 이는 日本으로부터의 도입기술의 대부분이 歐美先進國의 기술에 대한 複寫技術 내지 2次技術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現行技術導入認可制度

1. 技術導入의 定義

(1) 外資導入上의 技術導入

기술도입이라함은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其他技術의 讓受 그 사용에 관한 권리로써 代價의 지불을 對外支拂手段에 의하고 그 支拂期間 또는 契約期間이 1년 이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 (가) 高度의 産業技術을 應用하는 用役
- (나) 産業施設의 建設이나 그 圓滑한 稼動 또는 제품의 品質向上을 위한 용役
- (다) 國內에서는 그 提供이 不可能한 用役技術

(2) 技術用役育成法上의 技術導入

技術用役이란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고도의 科學技術을 應用하여 施設物의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査, 購買, 調達試驗, 監理(特殊工場 建設物), 試運轉, 指導, 技術的 妥當性檢討 등에 관한 용역으로서 代價支拂期間 또는 계약기간이 1年 未滿인 것을 말한다.

2. 技術導入認可基準

(1) 政策基調：個別審査를 통한 認許可制 다음에 該當하는 事業에 대하여 外資導入法에 의한 認可의 優先順位를 두고 있다.

- (가) 國際收支改善에 현저히 寄與하는 事業
- (나) 國民經濟發展 및 社會福祉에 寄與하는 事業
- (다) 重要産業 또는 公益事業의 발전에 기여하는 事業

(2) 導入獎勵技術

(가) 輸出市場開拓의 契期가 될 수 있는 事業
(나) 機械工業의 部分品製作 및 裝置工業의 工程開發을 위한 기술

(다)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國內에서 개발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經費面에서 非經濟的이라고 判斷되는 기술

(라)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限界效果가 生産面과 原價面에서 確實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除外技術〉

· 實質的인 기술도입이 아니고 原資材 또는 中間製品의 도입이나 單純한 商標使用 및 販賣效果를 目的으로 하는 기술

(다) 技術導入認可方式

(1) 技術導入의 自由化措置：78.4.20 外資導入法施行令 改正

① 自由化措置의 必要性

- (가) 開放體制로의 漸進的 移行的 必要性擡頭
- (나) 先進技術의 迅速·果敢한 도입의 필요
- (다) 國內技術水準과 民間企業의 自主的 判斷能
力의 向上
- (라) 企業의 國際競爭力強化 必要
- (마) 外貨事情의 好轉 등

② 自由化의 基本方向

(가) 防衛産業, 原子力, 컴퓨터 등을 除外한 모든 분야의 技術에 대하여 一定基準에 해당되면 自動認可하되 앞으로 國內經濟與件의 成熟에 따라 自由化幅을 擴大함.

(나) 導入面에서 自由化推進과 併行하여 管理面에서도 도입기술의 消化改良을 促進할 수 있는 支援策을 樹立, 實施함.

(2) 技術導入 認可方法

① 自動認可事項

(가) 對 象

機械, 造船, 電子, 電氣, 金屬, 化學 및 纖維産業에 關聯된 技術로서 技術導入條件이 다음과 같은 技術導入契約.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 3년 이하

○기술도입대가: 先拂金이 美貨 3萬弗以下로서 經常技術料가 純賣出額(後記 A)의 100分の 3 또는 이에 相當하는 價額 以下이거나 定額으로 美貨 10萬弗 以下.

(나) 認可節次

主務部長官이 即時認可

(다) 例 外

○單純한 意匠 또는 商標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原資財, 部分品 또는 附屬品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저한 不公正 또는 制限的 內容을 포함하는 경우 (後記 B參照).

○國內開發이 필요한 技術로서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科技處長官이 고시한 技術을 導入하는 경우.

○도입하고자 하는 技術의 內容이 低級 또는 落後된 技術인 경우.

② 準自動認可事項

(가) 對 象

自動認可事項 및 個別審査事項 以外的 技術도입계약.

(나) 認可節次

經濟企劃院長官이 關係部處에 意見照會하여 20日以內에 特別한 意見을 提示하지 않을 때에는 即時認可하며 特別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技術導入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認可.

③ 個別審査事項

(가) 對 象

原子力, 컴퓨터 및 防衛産業에 關聯된 技術도입계약과 技術도입 조건이 다음 1에 해당하는 技術도입계약.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 10년 초과.

○經常技術料: 純賣出額의 100분의 10 초과.

○先拂金: 美貨 100萬弗 초과.

(나) 認可節次

경제기획원장官이 關係部處에 意見照會後 技術導入審査委員會 및 外資導入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인가.

(3) 技術導入契約 審査事項

① 도입의 필요성

② 技術의 內容 및 提供方法

③ 技術도입의 대가 및 계약기간

④ 國內의 自主的 技術開發의 沮害 與否

⑤ 다른 同種技術과의 關聯性

⑥ 經濟的, 技術的 波及效果

<從前審査事項中 除外事項>

○技術代價支拂方法

○生産販賣計劃 및 原料調達方法

○製品價格의 妥當性

(4) 技術導入審査委員會

主務部長官이 特別한 의견을 回送한 技術도입계약과 個別審査對象의 技術도입계약의 인가에 關한 사항 등을 審의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 經協次官補를 委員長으로 하여 關係部處 局長級 등 12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됨. <계 속>

1人 1發明 1特許 企業은 成長한다.